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3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권명호·임이자·서범수

권성동 • 한무경 • 김석기

구자근 • 안병길 • 윤창현

김정재・이철규・강기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휴교·휴원 또는 휴업함에 따라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고 10일로 한정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 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양육"을 "양육(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5를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5(감염병 등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감염병자녀돌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5일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 2.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학교등"이라 한다)이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 휴교또는 휴원한 경우

- 3. 그 밖에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등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등교나 등원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감염병자녀돌봄휴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의 상한액,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주는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감염병자녀돌봄휴가의 신청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등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	②
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	
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의 <u>양육</u> 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u>양육(제22</u> 조의5제1항 각 호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	<u>는 제외한다)</u>
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	
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2조의5(감염병 등에 따른 자

녀 돌봄을 위한 지원) ① 사업 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감염 병자녀돌봄휴가"라 한다)를 청 구하는 경우 연간 15일 (근로 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주는 것 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 2.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 하 "학교등"이라 한다)이 감 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에 따라 휴업, 휴교 또는 휴 원한 경우

- 3. 그 밖에 근로자의 자녀가 다 니는 학교등이 감염병의 예 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휴 업하는 등 등교나 등원이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감염병자녀돌봄휴가 기간에 대 하여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5 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의 상한액, 지원요 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22조의5(일·가정 양립 지원 기 제22조의6(일·가정 양립 지원 기 반 조성) (생 략)

제37조(벌칙) ① (생 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다.

1. ~ 8. (생 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다.

- ④ 사업주는 감염병자녀돌봄휴 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 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⑤ 감염병자녀돌봄휴가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 조성) (현행 제22조의5와 같 유)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1. ~ 8. (현행과 같음)
- 9.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이유 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 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②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③ • ④ (생 략)

<신 설>

- 1. ~ 8. (현행과 같음)
- 9.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④ (현행과 같음)